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사항 (1)

“1주는 7일” 명시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 300명 이상 사업장 : 2018. 7. 1. 시행
- 50~299명 사업장 : 2020. 1. 1. 시행
- 5~49명 사업장 : 2021. 7. 1. 시행

현행법으로도 1주의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이었고,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이었습니다. 문제는 1주에서 휴일을 제외함으로써 주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고용노동부의 괴이한 행정 해석이었습니다. 개정법은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임을 명시함으로써 **고용노동부의 궤변을 폐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계적 시행**이라는 한계도 있습니다.

결국 평일과 주말을 구분할 것 없이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 ① 월~수요일에 총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목~금요일은 물론 토~일에도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② 월요일 20시간, 화요일 20시간, 수요일 12시간(총 52시간) 일해도 괜찮은지? → 안됩니다. 1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 부분은 연장근로입니다. 월요일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남은 요일에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 5~29명 사업장은 2021. 7. 1. ~ 2022. 12. 31. 기간 동안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결국 5~29명 사업장은 2022. 12. 31.까지는 **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휴일근로 가산임금 지급기준 신설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고용노동부의 해석과 같은 방향으로 **개악**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월~금요일에 40시간을 일하고 휴일인 토요일에 일하더라도, 해당 휴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인 경우 50%만, 8시간을 넘는 경우 100% 가산합니다.

개정법 공포 이전(현재 정부 이송되어 공포 대기중)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가산 여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전원합의체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자의 1주 근로시간 축소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2018. 7. 1.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주요 사항 (2)

관공서 공휴일 적용

제55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300명 이상 사업장 : 2020. 1. 1. 시행
- 30~299명 사업장 : 2021. 1. 1. 시행
- 5~29명 사업장 : 2022. 1. 1. 시행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자의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 뿐이었습니다. 이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일반 노동자에게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휴일에 더하여 신정 / 3.1절 / 부처님오신날 / 현충일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 기독교탄신일 / 임기만료 공직선거일이 추가로 보장됩니다.

그리고 구정과 추석의 당일과 전날·다음날, 어린이날도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물론 이들의 경우, 다른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 유급휴일이 됩니다.

금속노조 10기 1년차 법률학교 진행



2018. 2. 22.부터 2. 24.까지 2박 3일간 전북 장수 농업연수원에서 10기 1년차 금속노조 법률학교를 76명의 동지와 함께 힘차게 진행하였습니다.

헌법과 노동3권, 임금과 임금체계, 산재보상,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부당노동행위 대응법, 구조조정과 기업회계, 법률분쟁시 대응법,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쟁의행위, 최저임금 등 최근 정세와 노동조합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률 문제에 관하여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률학교 참가 동지들이 법률원 교육에 대하여 격려와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법률원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협이 있기 전에 교육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사례 중심, 판례 중심으로 잘 설명해 주셔서 좋았고, 시간이 짧은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 “시간을 늘려 좀 더 세부적인 교육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구조조정에 있어 항상 사용자들은 기업회계를 들먹이는데 이젠 회계를 분석하여 역공을 해야 할 것 하다.” /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잘 하셨다. 노조활동에 대한 방향 제시도 좋음.”